



제300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남양주시 중소유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
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. 25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1. 제안경과

-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
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중소기업진흥지원법 제20조(재산의 관리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대형마트, SSM 등의 골목상권 무분별한 진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함
- 특히,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) 위탁사무 내용

- 물류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“시”의 사전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업
-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요구하는 사항

3) 위탁시설 개요

○ 시설개요

시 설 명	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
소 재 지	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411번길 49(가곡리 316-5외 5필지)
시 설 규 모	토지면적 : 6,446㎡, 건축연면적 : 2,257㎡(지상3층)
운 영 인 력	3명(상무이사1, 총무관리부 1, 사업부 1)
사 업 내 용	상품의 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물류, 공동도매 사업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4) 민간위탁 기간

○ 2023. 6. 1. ~ 2027. 5. 31.

5)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 위탁 (수의계약)

- (근거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위탁

【유통산업발전법】

제17조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자단체

- (2023. 05. 26.) 남양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심의

- ▶ 심의안건 : 남양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위·수탁 협약
- ▶ 수탁자 : 경기동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
- ▶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6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해당사항 없음(물류센터는 중소기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운영 관련 예산지원은 없음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참고자료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7조의2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·배송·판매 등을 할 수 있는 ‘남양주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’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7년 6월부터 3회에 걸쳐 위탁(재위탁)하여 운영하였으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사후 행정절차(동의)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- 물류센터 운영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, 정보, 인적·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대규모 마트 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별도의 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없습니다.

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

건립목적

- 슈퍼마켓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유통과정을 축소시킨 저렴한 가격과 수수료로 상품을 공급·배송해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건립됨.

센터현황

- 시설개요

구 분	내 용
소재지	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411번길 49(가곡리 316-5외 5필지)
건립기간	2012. 3. ~ 2015. 12.
운영방법	위·수탁 협약 (경기동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) 위탁 기간 ①차: 2017. 6. 1.~ 2020. 5. 31.(3년) ②차: 2020. 6. 1.~ 2023. 5. 31.(3년) ③차: 2023. 6. 1.~ 2027. 5. 31.(4년)
건립액	6,125백만원(국비 2,420, 도비 185, 시비 3,520)
규모	토지면적 : 6,446㎡, 건축연면적 : 2,257㎡(지상3층)
주요업무	상품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물류, 공동도매 사업
직원현황	3명(상무이사1, 총무관리부 1, 사업부 1)
조합원수	48명 (*개설 당시: 124명)
업무구역	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가평군

운영현황

(단위: 명, 개, 천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
조합원수	69	67	55	48
상품품목수	355	389	379	368
매출액	861,114	700,299	629,757	568,949

※ 사용료 :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**매출액의 1천분의 4**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·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있음.

☑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17조의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중소유통기업자단체”라 한다)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(이하 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”라 한다)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상품의 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물류사업
2. 상품의 전시
3. 유통·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·가공·제공
4.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
5. 그 밖에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자단체
2.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·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,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☑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,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 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위탁기간
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